

용인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효담채

시설 운영규정

〈제정 : 2008년 07월 01일〉

〈개정 : 2012년 09월 07일〉

〈개정 : 2014년 09월 07일〉

〈개정 : 2019년 04월 26일〉

제 2 장 이용자의 시설이용

제 5 조 (이용대상)

시설의 운영에 있어 대상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은 65세노인
- ②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 ③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한 65세 이상 노인

제 6 조 (이용정원)

- ①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 : 정원제한은 없다.

제 7 조 (모집방법)

-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 및 가족들의 전화상담 후 내방 및 방문상담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상태를 사정한다.
- ② 리플릿 배부, 지역소식지, 공단 및 시설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해 연1회이상 장기요양 급여종류를 홍보하고 이용자를 모집한다.
- ③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확보한다.

제 8 조 (구비서류)

시설을 이용하는 본인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목욕 사업

- ① 방문요양/목욕 서비스 이용 계약서

- ②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상담기록표
- ③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승낙서
- ④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⑤ 표준장기이용계획표 사본
- ⑥ 욕구평가기록지
- ⑦ 욕창 위험도 평가도구
- ⑧ 낙상 위험도 평가도구
- ⑨ 급여제공계획서

제 9 조 (이용계약)

-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들은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 ②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기간에 맞추어 이용자 및 보호자와 합의하여 산정한다.
- ③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 계약 가능하다.

제 10 조 (이용비용 및 수납, 환불)

- ①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는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구 분			금액(원)	내 역
등급자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 - 85% 본인부담금 - 15% (의료급여수급자 - 6, 9%, 국기초 - 무료)

- ④ 재가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이용한도액이 넘어 공단에 청구가 불가능할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 ⑤ 시설은 전향 각호에 게재된 비용액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미리 입소자 또는 그 가족에게, 해당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에 대해 설명을 실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재가급여서비스 이용비용은 각 사업에 따라 용인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효담채의 지정계좌로 입금하도록 한다.

⑦ 불가피한 상황으로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미리 선납한 이용료의 경우 본인 및 주 보호자의 지정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시설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이용자는 시설의 규정 및 사업 내용에 따른 이용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시설은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을 다할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시설은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할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장기이용계획표 및 서비스계획표에 의거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성실히 납부할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과 이용자의 건강상태 변화 등 시설 이용에 있어 시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즉시 통보해 줄 의무(단,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 12 조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 이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때 유선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서비스이용료가 12개월 이상 미납되어 보호자가 더 이상 납부하지 못할 경우
- 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③ 이용자가 아래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 병원에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서비스 불이용이 90일 이상이 되면 자동계약이 종결된다.

제 13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및 절차)

다음 각 조항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신청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14 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①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식사도움, 배변도움, 신체기능유지증진, 몸단장 등
 -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 정서지원 : 말벗, 산책, 격려 등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 ※ 단, 정서지원서비스 총 60분,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총 120분 이상을 제공하지 못한다.

(외출 시 동행 사유 발생으로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초과 사유 발생 시 예외로 한다.)

② 방문목욕서비스 : 요양보호사 2명이 목욕 설비를 갖추고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지원한다.

③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④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대상자를 보호한다.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서비스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발생하는 병원이용 등 실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5 조 (서비스 이용시간)

1. 방문요양/목욕 서비스

- ① 월 - 일요일(주7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05:30 - 22:30분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② 시설장의 재량으로 지역여건과 이용신청자와의 요청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운영 할 수 있다.

제 16 조 (서비스의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

① 배상책임

- 시설은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배상책임 보험료는 100% 시설에서 부담한다.
- 서비스제공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해결하고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진다.

② 면책범위

-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손해
- 이용자 또는 서비스제공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 이용자 또는 서비스제공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 보호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해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로 발생한 손해

③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또는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한다.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위 규정에 의한다.

4. (운영규정의 개정)

운영규정의 개정은 개정이 필요한 사항 발생 시 항목 내용의 개정사항은 시설에서 내부기안을 통해 수정·보완하도록 하며, 조항의 변경이나 추가 및 삭제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개정하도록 한다.